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안보침해범죄및활동등에관한
대응업무규정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윤호중 (국가정보원 소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정보원장이 「형법」상 내란·외환의 죄 및 「군형법」상 반란의 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경우 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체없이 제공하도록 하여 적시성 있는 대응업무 체계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○○○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

일부개정령안

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국가정보원장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호다목 중 「형법」 중 내란의 죄, 외환의 죄, 「군형법」 중 반란의 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경우 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. 이 경우 정보를 요청받은 유관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정보 제공의 범위, 시기, 방식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유관기관과의 협력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7조(유관기관과의 협력) ① ~ ③ (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) ④ <u>국가정보원장이 유관기관의 장</u> <u>에게 제2조제1호다목 중 「형법」</u> <u>중 내란의 죄, 외환의 죄, 「군형법」</u> <u>중 반란의 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</u> <u>경우 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</u> <u>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</u> <u>제공해야 한다. 이 경우 정보를</u> <u>요청받은 유관기관의 장은 국가</u> <u>정보원장에게 정보 제공의 범위,</u> <u>시기, 방식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</u> <u>할 수 있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정보원	
연 락 처	(02) 2210 - 8083